

삼척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4월 4일 삼척시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1995년 4월 4일

다. 심사일자 : 제4회 삼척시의회(임시회) 제1회 총무위원회(95. 4. 10)에서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공보담당관 민경오)

가. 제안이유

삼척시립박물관의 성격, 건립규모, 전시계획, 기타자료수집 및 감정평가에 관하여,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건립구상에 반영하므로써, 건축, 전시 및 운영전반에 걸쳐 내실있는 박물관건립을 추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박물관건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를 둠. (안 제1조)
-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박물관및 건축학 관련교수, 기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(안 제3조)

- 위원의 임기는 박물관 개관일까지로 함 (안 제5조)
-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9조)
- 이 조례는 삼척시립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폐지됨. (부칙 제2항)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흥원표)

시립박물관건립에 따른 건립규모, 전시계획, 건축등 박물관건립 전반에 대하여, 이 분야에 정통한 건축학 교수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,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동조례는 삼척시립박물관건립과 동시에 폐지되는 한시 조례로써,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